제166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3. 8. 31.

□ 안 건 명 :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공사

위 안건에 대한 제166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 을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은 관련법에 따라 적용하여 추후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등이 예방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단지 내 계획된 오수관은 심도가 깊어 유지관리 어려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매설심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 우수 수리계산시 강우강도 입력오류, 유역면적 상이, 지구 외 유출계수 적용오류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

○ 대사골천교 확장교의 기존 교량과 이음부 하자 예방을 위한 시공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반의 불균질성과 국부적인 지층분포 등을 설계시 수행한 한정된 지반조사 결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공 전 과업구간의 지층 및 지하수위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교량)구간, 연약지반구간, 비탈면 구간에 확인 시추조사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기 바람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도로**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1. 상위계획 등을 수정할 것 -보고서 P-4~14 1.2.1 상위계획 및 개발여건분석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년)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변경필요** (2)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산업자원통상부, 2014) **→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9) 변경필요**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변경필요** (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0~2030)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23) 변경필요**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2012~2016) **→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3~2025) 변경필요** - 보고서 P-23~30 1.2.2 서울시 여건분석 자연환경, 인구 및 사회환경, 기반시설 현황 등 분석시 2016년 기준 강동구 통계연보 적용 **→ 최신 「2022년 강동통계연보」 변경필요** 2. 최신 설계기준을 반영할 것. - 보고서 P-97, 설계도 도로종단면도(1/3~3/3) 다. 도로의 기하구조 - (3) 종단선형 개정된 종단곡선최소변화비율(m/%) 미반영 및 종단면도 내 종단곡선최소변화비율 미표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적용 및 설계도(종단면도)에 적용된 종단곡선최소 변화비율 표기**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계획성	–	
시공성	–	
유지관리	–	
안전성	3. 설계도를 수정할 것. – 설계도 도로횡단면도(15/22~17/22) 깎기구간 내 보도설치시 비탈면 유입수에 따른 배수시설 미반영 **→ 강우시 보행자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깎기 비탈면 유입수 배제를 위한 U형측구 설치 필요** 4. 설계도를 수정할 것. – 설계도 도로횡단면도(19/22~20/22) L형옹벽 설치구간 보행자 및 차량 안전 대책 필요 **→ L형옹벽 설치높이를 도로계획고 보다 30cm 높게 하고 난간 설치 필요**	
경제성	–	
환경성	–	
기 타	5. 설계도를 수정할 것. – 설계도 포장단면 및 경계석 상세도(1/2) **→ 배수시설물 중 L형(보차도 경계석)측구는 「도로 연석(보차도경계석) 품질향상 방안(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2018.4)」 의거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포장 단면 변경 필요**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토목구조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1. 안전관리비(안전점검 등)를 추가 반영 필요.(건설기술진흥법 62조 11항, 시행령 98조, 시행령 101조의 2, 시행규칙 60조 1항)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공사	
계획성	2. 대사골천교 보도교 계획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함 (1) 캔틸레버식 달아매기 공법 적용성 재검토 필요. (2) 설계하중 및 접속슬래브 반영 적정 여부 확인 바람. (3) 종점측 배수통관 저촉에 따른 시공계획 추가 필요. 3. 도로표준횡단면도 중(집)1-411 단면도와 평면도 치수가 불일치 및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하기 바라며, 상일3교 횡단면도와 일치시키기 바람. 4. 포장공 공사 중 가설도로 계획 평면도에 시점부 교량 연결구간도 포장계획 추가 필요. 5. 저류지 바닥 공사에 대한 시공 계획 및 상세 추가 필요. (1) 잔디 식재 하부 및 농구장 바닥 설치 전 하부 처리 계획 등	
시공성	6. 교량 일반도 기초 평면도 등에 시공 위치 확인을 위한 좌표 표기 추가 필요함. 7. 상일3교 교대 기초 시공 중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시공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가시설(Sheet Pile)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가시설 미설치시 기초 EL. 상향 가능 여부 검토 바람. 8. 저류지 역T형 옹벽 방류관 등 연결구간 시공상세도 추가 필요함. (1) 주 여수로 방류관 연결부 상세도 추가 필요. (2) 비상 여수로(U-Type) 연결부 상세 등 추가 필요. 9. 대사골천교 교면배수시설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책 수립이 필요함.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유지관리	10. 대사골천교 확장교의 기존 교량과 이음부 하자 예방을 위한 시공 방안 검토가 필요함. (1) 상부 보도구간 공용 중 콘크리트 포장부 균열 발생 등 우려. 11. 저류지 유지관리도로 하단부 U형 측구는 유지관리 차량 등 통행을 고려하여 흄관 등으로 변경 필요. 12. 저류지내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저류지 인접 소공원쪽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1) 저류지내 농구장 주변 휴게 시설물 추가 설치 검토.(그늘막 등) (2) 농구골대는 이동식보다는 고정식 추천(저류지 수위 상승 고려)	
안전성	13. 기존 교량 철거용 가설 공중비계는 구조계산을 수행하여 설치도면 작성이 필요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조계산이 어려운 경우 시공 전 검토 수행을 위한 구조계산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기 바람.	
경제성	14. 대사골천교 보도교 계획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함 (1) 설계하중 적용 및 접속슬래브 반영 적정 여부 확인 바람. 15. 교량 강관말뚝은 매입말뚝으로 적용되므로 선단보강 삭제 필요. 16. 대사골천교 교명주 및 설명판 삭제 검토.	
환경성		
기 타	17. 교량 난간설치 높이 적정 여부 확인 필요. (1) 일반적으로 난간 상단 높이는 포장면에서 1.2m, 자전거 도로의 경우 1.4m이므로 적정 여부 확인 필요.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토목시공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2조의2 제3항)	
계획성	- 의견없음	
시공성	2. U형측구 및 우수맨홀 및 집수정은 공장 주문생산 제품 검토 필요 (1) 현장 타설을 공장 주문생산으로 변경하여 시공성 개선 필요함	
유지관리	-의견없음	
안전성	3.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실지 시공시 현장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안전성 재검토하여 안전성 여부 확인 필요함.	
경제성	4. 교량공 및 옹벽공의 구체부위는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시공성, 경제성 유리)으로 변경 필요함. 5. 교량공 및 옹벽공의 철근가공조립은 현장가공을 공장가공(품질 및 경제성 유리)으로 변경 필요함.	
환경성	- 의견없음	
기 타	6. 간접노무비 와 기타경비 요율은 2023년 원가계산 제비율와 상이하니 확인 필요함. 7.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 부금비 누락으로 반영 필요함. 8. 전자카드 단말기(벽부형, 부스형, 이동형 선택)는 설치 후 퇴직공제 부금비로 정산 되도록 계약서류에 명기 필요함. (1)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및 제12조의2 제3항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토질**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계획성	1. 연약지반 구간에 대해서 침하안정성 검토를 수행한후 설계시 침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과업구간의 동측에 위치한 깍기 비탈면(1-1'단면) 계획구간은 시추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인근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이며, 산지부 특성상 비탈면 상부에 붕적층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21.1) 2.비탈면공(설계 및 수량산출 요령)"에 따라 공용중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평배수공을 계획하기 바람. 3. 대사골천교는 확장교량으로 계획된바, 대사골천교 시공시 기존교량 구간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경사계 및 균열측정계 등의 계측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4. 지반의 불균질성과 국부적인 지층분포 등을 설계시 수행한 한정된 지반조사 결과로는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시공 전 과업구간의 지층 및 지하수위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교량)구간, 연약지반구간, 비탈면 구간에 확인시추조사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기 바람. 5. 구조물기초 설계기준해설(2018.3) 5.4.4에 따라 말뚝재하시험 계획시 정재하시험 또는 동재하시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신설교량 상일3교의 경우 정재하시험(1회) 및 동재하시험(3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말뚝재하시험 계획을 최적화하여 내역에 반영하기 바람.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계획성	6. 대사굴천교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7. 구조물기초 재하시험에 대한 내용을 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8. 관로구간 임시터파기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9. 신설 및 확장교량 구간에 대한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지지력 및 침하량 등)가 누락되었으므로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10. 지반조사결과 과업구간 일부 시추공(SB-01 및 SB-03)에서 N치 4이하의 연약점성토가 1.0~1.3m 층후로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나, 연약지반에 대한 침하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수행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기 바람. 11. 상일3교 교대 굴착사면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경제성		
환경성		
기 타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상하수도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1.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1)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계획성	2. 우수수리계산시 강우강도입력오류, 유역면적상이, 지구 외 유출계수 적용오류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 3. 우수관 접합방식이 소켓으로 되어있는데 PE수밀벨트로 변경 검토. 4.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장치형(여과)으로 설치하였는데 영구저류지를 활용(이중목적 저류지)하여 자연형(저류지)초기우수처리시설로 설치하기바람.(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2020.10,환경부) 5. 오수량 산정시 지하수량을 일최대오수량의 20%로 계획하였는데 적용근거 제시필요.(5~10% 적용검토)	
시공성	-	
유지관리	6. 우수,초기우수처리시설,영구저류지,오수,상수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시공시, 운영시, 유지수선시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안전성	7.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따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비 등을 설계내역에 반영하기 바람.	
경제성	-	
환경성	-	
기 타	-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조경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계획성	1. 가로수 수목보호덮개 설치 대신 점(Point) 녹지공간 조성 검토 - 외곽 규격 1200X1400mm 수목보호덮개 설치 대신 가로수 점(Point)녹지공간(1000*1400)으로 조성, 초화류 등 식재 - 수목보호덮개는 수목 성장에 따라 내경조절판의 유지관리필요 - 수목보호덮개 사용시에는 디자인덮개(압연강)로 변경 검토 - 보도 폭W2.5m의 공간에서 가로수 공간 축소 조정으로 보행편의 제고 및 녹화율 향상 - 도면 LA-302, LA-413 2. 저류지 안쪽으로 설치한 운동시설은 제방 상부로 설치 위치 조정 - 썬베드 설치지역 주변 등으로 운동시설 설치위치 조정,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저류지 활용빈도가 높아지며, 침수된 운동시설은 유지관리 곤란 및 이용성 떨어짐 3. 자연석 쌓기에서 석재 종류 및 규격 명확화, 돌틈 식재 검토 - 도면에 자연석쌓기로 표현된 자연석이 조경석(발파석, 발파가공석), 자연석(강석, 해석, 산석)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 자연석 쌓기 사이 틈새 식재로 경관성 향상 • 돌틈사이 사이에 돌단풍, 꽃잔디, 철쭉류 등 식재 - 도면 : C-R-31	
시공성	4. 경관녹지2의 잔디측구의 시·종점부가 인접한 토목집수정으로 우수가 유출될 수 있도록 검토 - 도면 LA-211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유지관리	5. 투수블럭 설치시 투수시트 시공위치 재검토 - 토목도면(C-P-08)에 투수블럭 입면도상에 투수시트 시공위치는 쇄석층(투수기층)와 모래층(받침안정층)사이에 있어야 함.(빗물 침투로 인한 모래 유출 방지기능) - 조경도면과 비교 확인 검토 - 참조 : ①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2013.3 p18) ② 한국형 저영향개발 도시융합설계 가이드라인(2018년3월)	
안전성	6.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LED 패널 설치 검토 - 통행중 핸드폰이용자, 교통약자 등의 안전을 고려한 바닥 신호등 설치 검토 - ex) 보go듣go 횡단보도	
경제성		
환경성		
기 타	7. 경관녹지1 서측 보도옆 녹지에 계획된 U형측구 대신 자연성, 환경성(침투), 경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토목과 협조 검토 - 보도와 인접한 녹지대 경계로 현장타설용 콘크리트 측구(스틸그레이팅포함)은 경관저해 요소이므로, 우수유출량 등을 감안하여 자연적인 배수로(잔디도랑) 형성 또는 침투측구, 시공성을 고려한 기성품 U형 측구 등으로 조정 검토 - 도면 : LA-202, LA-203, LA-210, C-R-22 8. 투수블럭 모래안정층 두께 도면과 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 등과 불일치 수정 - 도면 : LA-414, 모래층 T30 - 내역서 : 모래층 T40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검토 수정 요망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전기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1. 가로등 전압강하기준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에 의거하여 전압강하 기준 변경 바람	
계획성	2. 교차로에 설치하는 2등용 가로등주는 "탄소 강관등주 및 스테인레스 강관등주" 단체 표준에 따라 원형1단(Φ165.2)에 설치 불가함으로 등주 형식을 원형2단으로 변경 바람	
시공성	3. 공원 및 녹지에 설치되는 CCTV와 관련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로 분리하여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가 되도록 보완 바람(도면 E-501~503)	
유지관리	-	
안전성	4. 단지 내 중로2류, 중로3류 도로에 보도 2.5m 및 보도용 전면공지를 설치하였는데 야간 이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등을 추가 설치 바람 (보고서 64쪽, 도면 E-101)	
경제성	5. 공원 및 녹지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의 전원 및 통신 개별 인입 배선을 통합배선 방식으로 변경 바람	
환경성	-	
기 타	-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023년 8월 31일

심의위원 :

건 설 기 술 심 의 채 택 의 견 서

○ 안 건 명 : **제166차 강동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 분　　야 : **공통**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확보면적: 적정 (단지면적 78,136㎡ 중 공원 녹지면적 12,543㎡_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항에 의거, 5.5~7.5% 확보 - 소공원 설치 및 규모기준: 적정 (유치거리 및 면적 제한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소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17.7%, 적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조경
	1. 교량 철거후 인양된 부재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기 바람	토목
	2.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5항, 제62조 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비계 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시행하기 바람	
계획성	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내용은 최근 수립된 계획을 적용하기 바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등	토목
	4. 도로 계획 및 교량 신설에 따른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국토교통부)을 이용하여 공사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및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토사운영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6. 과업 대상지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조사,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지장물로 인한 시공 중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지장물 조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 이설계획 수립 - 과업 대상지의 지장물도를 추가하고, 작성 시 지장물 관리주체를 명시하여 유사 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설계도면에 제시한 축도 및 임시 야적장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보고서에 보완하기 바람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8. 경관녹지 1~4 (1) 단지내 교차로 및 진출입구 연접부 등 일부분이라도 경관녹지의 특성에 맞는 식재컨셉 도입 필요 (2) 경관녹지 1의 경우 비오톱 2등급지와 연접한 부분에 대하여 전이 공간으로서의 검토 필요, 적정수종 선정여부 확인	조경
	9. 전기 도면에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 - 분전반 및 보안등 기초 상세도	전기
시공성	10. 상일3교 및 가교에 대한 시공순서도 작성 필요	토목
	11. 교량 가설 및 철거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 - 시공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크레인의 부하율 재검토 필요 - 하부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크레인의 작업 반경 재검토 필요	
	12. 저류지 우측부 상단과 진입 산책로 사이 구간 관목 등 식재 보완필요	조경
	13. 저류지 내 농구장과 저류지 바닥 잔디 식재구간 재료분리석 규격 상향조정 검토 (100→150)	
	14. 소공원 야외테이블 설치 위치 재검토 필요 (그늘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15. 주요 산책로변 썬베드 설치 위치 재검토 필요	
유지관리	16. 단지 내 계획된 오수관은 심도가 깊어 유지관리 어려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매설심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토목
	17. 경관녹지와 소공원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잔디 수로로 시공계획하였는데 유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단지외곽 경계부, 집수정 주변 등)에 대하여 고정형 수로(돌수로 설치 등)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조경
	18. 단지외곽 경계부는 조팝나무와 개나리 외 상록성 수종 보완 필요	
	19. 음수전 및 관수시설 설치 검토	
안전성	20. 대사골천교의 확장과 시종점부의 가시설 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기존교량 및 가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 계획을 수립하고 계측기별 계측빈도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바람	토목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21. 바닥판 해체 및 설치시 교량 상부 작업자의 추락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관련 계획을 설계보고서에 보완하기 바람	토목
	22. 파고라 하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편의을 위하여 필요하나 각각의 개별시설로 설치할 경우 운동기구와 파고라 기둥과의 간격, 운동시설물 간의 배치 간격 등으로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우려, 일체형 시설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조경
경제성	23. 경제성을 고려하여 합판거푸집 물량 중 유로폼으로 적용이 가능한 구간은 유로폼으로 적용 필요	토목
환경성	24. 오탁방지막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토목
기 타	2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등 반영 검토 필요	토목
	26. 조성완료 후 저류지 관리주체 및 업무구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소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 (시설 및 식재관리, 저류지 구조에 대한 관리, 통제관리 등)	조경
	27. 사업구간 내 임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0조, 40조의2, 42조 등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공사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할 것	조경
사 유 (미반영, 수정, 추가 등)	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은 관련법에 따라 적용하여 추후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등이 예방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2023년 8월 21일

심의위원 :